

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이성수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5. 6. 13.

사 회 건 설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
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544호로 2025년 5월 30일 이성수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와 관련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, 고령 및 노인친화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책무, 추진계획(안 제4조 ~ 제5조)

다. 생산품 우선구매, 보험가입(안 제8조 ~ 제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5. 6. 3.~2025. 6. 10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□ 개정 배경 및 취지

- 생활수준의 향상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2023. 10. 31., 시행 2024. 11. 1.)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
□ 주요 내용으로

- **안 제1조(목적)**는 상위법인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이 제정됨에 따라, 인용 법률을 해당 법 제명으로 개정함.
- **안 제2조(정의)제1호**는 법에서 규정한 노인 지원대상 기준을 반영하였으며,
 - **제2호**는 본 조례의 골자인 ‘노인일자리’에 대하여 법의 정의를 준용하여 조문 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함.
- **안 제4조(구청장의 책무)**는 법 제3조에서 규정한 ‘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’를 반영하고자 조문을 개정함.
- **안 제5조(추진계획)제1호**는 추진계획에 ‘노인일자리 지원의

- 기본방향'을 신설하여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구체화하였으며,
- 제3호는 교육 대상을 기존의 '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'에서 보다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함으로써 교육 대상을 넓힘.
 - **안 제8조(생산품 우선 구매)**는 법 1)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)제10조에 근거하여 신설된 조항으로,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 기업·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함.
 - **안 제9조(보험가입)**는 구청장에게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였는데,
 - 법 3)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)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'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'에게 '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상체계 마련'하도록 조치해야할 의무가 부여됨.
 - 한편, 법 5)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'노인일자리지원기관'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한 것은 참여자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
-
- 1) 제18조(노인생산품 우선구매)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 - 2) 제10조(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) 법 제18조에서 “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.
 - 3) 제23조(참여자 보호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 - 4) 제13조(참여자 보호의 내용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(이하 이 조에서 “참여자”라 한다)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(이하 “노인일자리 수행기관”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.
2.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상체계 마련
- 5) 제9조(노인일자리전담기관)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·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- 아울러, 해당 내용은 이미 영등포구에서 시행 중인 사항이므로, 제도적、행정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□ 검토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법에서 규정한 사항(정의, 생상품 우선 구매, 보험가입 등)을 영등포구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참고 자료

1

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노인일자리”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,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.

5. “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”(이하 “노인”이라 한다)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·보급하고,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8조(노인생산물 우선구매)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23조(참여자 보호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2

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0조(노인생산물 우선구매 대상 기관) 법 제18조에서 “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.

3

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13조(참여자 보호의 내용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(이하 이 조에서 “참여자”라 한다)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(이하 “노인일자리 수행기관”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.

1. 사업유형별 안전 전담인력 배치
2.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상체계 마련